

제2765호
2020. 9. 9.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20-115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2
제2020-116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3
제2020-117호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4
제2020-118호 :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5
제2020-119호 : 주택건설사업자 위반업체 행정처분 고시	7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115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1가 32-1외 1필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37길 3	2020. 9. 9.	만리재로37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만리재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00-3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길 58	2020. 9. 9	동호로20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20. 6. 30	동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116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213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1가 35-2	2020. 9. 9	건물 말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길 58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00-3번지	2020. 9. 9	건물 철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117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지적도근점 번호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소재지
	X(m)	Y(m)	X(m)	Y(m)	
9853	551,840.52	199,101.61	451,534.63	199,030.76	을지로 108(을지로3가)
9854	551,815.12	199,090.11	451,509.24	199,019.26	을지로 106(을지로3가)
9855	551,776.20	199,107.44	451,470.32	199,036.59	을지로 106(을지로3가)
9856	551,770.52	199,066.66	451,464.64	198,995.81	을지로 106(을지로3가)
9857	551,768.38	199,055.28	451,462.50	198,984.43	을지로 106(을지로3가)
9858	551,766.02	199,033.31	451,460.14	198,962.46	을지로 106(을지로3가)
9859	551,753.48	199,026.20	451,447.60	198,955.35	을지로 106(을지로3가)
9860	551,798.70	199,034.77	451,492.82	198,963.92	을지로 106(을지로3가)
9861	551,808.52	199,062.02	451,502.64	198,991.16	을지로 106(을지로3가)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설치일	2020.8.20.				
표지의 재질	철재				
측량성과 보관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비고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0-118호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41호(2006.04.20.)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3호(2012.05.10.),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0-91호(2020.07.16.)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및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0-7호(2010.01.29.), 제2014-35호(2014.05.07.), 제2016-97호(2016.10.31.)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5-11호(2015.02.25.), 제2018-31호(2018.04.04.)로 관리처분(변경)인가 고시되었다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0-114호(2020.09.02.)로 공사완료 고시된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경미한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72)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82-2번지 일대
- 2) 면 적 : 변경 전 - 2,041.5㎡(대지 1,541.5㎡, 정비기반시설 500㎡)
 변경 후 - 2,058.0㎡(대지 1,546.0㎡, 정비기반시설 512㎡)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 1) 명칭 및 대표자 : (주)교보자산신탁(대표이사 조혁중)
-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4층

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0.9.8. (최초인가일 2015.2.25.)

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분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층수 (지상/지하)	높이 (m)	주용도
변경전	1,541.5	922.66	59.85	21,658.68	1,171.8	26/3	99	숙박시설
변경후	1,546.0	〃	59.68	〃	1,168.38	〃	〃	〃

- 2)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가) 분양대상자 및 분양면적

구분	분양대상자		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물			비고
	성명	주소	토지(m ²)	건물(m ²)	용도	
변경전	(주)생보 부동산신탁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99 (서초동, 강남메트로빌딩 9층)	44.98	632	숙박시설	
변경후	(주)교보 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대치타워 14층)	45.11	''	''	

나) 체비지 시설

변경전	변경후
토지 1,496.52㎡, 건물 21,026.68㎡	토지 1,500.89㎡, 건물 21,026.68㎡

다) 보류지 시설 : 해당없음

3)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가)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행정청에 무상귀속)

변경 전					변경 후				
종류	명칭	규모	설치비용	관리청	종류	명칭	규모	설치비용	관리청
도로	중로2-1	104.04	시행자 부담	서울시 중구	도로	중로2-1	102.7	시행자 부담	서울시 중구
도로	소로1-1	16.84	시행자 부담	서울시 중구	도로	소로1-1	20.1	시행자 부담	서울시 중구
소공원	-	379.12	시행자 부담	서울시 중구	소공원	-	389.2	시행자 부담	서울시 중구
계		500			계		512		

나)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 해당 없음

바. 관계서류 : 생략(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비치서류와 같음)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119호

주택건설사업자 위반업체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9. 7.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처분일자 : 2020. 9. 7.

2. 처분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3.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처분사유	처분내용
서울-주택 2011-0039	현대비에스앤씨(주)	김태영	중구 퇴계로 272 (장충동2가)	변경신고 지연 (대표자변경등기일 : 20.04.28 변경접수일 : 20.07.17)	경고

4. 안내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주택과(☎02-3396-57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